



제 1133 호

2013년 10월 11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칙 제834호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 2
- 규칙 제835호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 7
- 규칙 제836호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 14

훈 령

- 훈령 제290호 남동구 사무 내부위임 규정 일부개정 규정 17
- 훈령 제291호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 21

공 고

- 공고 제2013- 142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1
- 공고 제2013- 1428호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 예고 통지 불능자에 대한 공고 37
- 공고 제2013- 143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 21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8
- 공고 제2013- 1433호 「음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체납고지 및 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9
- 공고 제2013- 1435호 2013년 제1차 장기미반환 차량 공매 공고 50
- 공고 제2013- 1439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54
- 공고 제2013- 1440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공고 의뢰 및 이해 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55
- 공고 제2013- 1448호 수용재결 정본 공시송달 공고 56
- 공고 제2013- 1452호 남동구청 꿈나무 스포츠단 모집 공고 57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제2013- 31 예정 공고 58

고 시

- 고시 제2013- 10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59

회 람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10월 11일

남동구 규칙 제83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 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2013. 2. 28부터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 임 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1. 의약품판매에 관한 사항 가. 의약품도매상 허가 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다. 도매상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약사법」 제35조제2항 같은 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제84조제1항	보건소장
	2.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 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다.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및 개수명령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처분 마. 보고와 업무감사 바. 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의료법」 제3조 「의료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63조의2	
	3. 의약품판매업(한약종상, 약종상, 매약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허가 나. 허가사항 변경허가 다.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처분 라.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갱신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 「약사법」 제35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4.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바.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마약류 도매업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 제5항 같은 법 제10조	

위 임 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사. 사고마약류의 처리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승인 차. 마약의 도매보고 카. 마약의 소매보고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파. 허가 등의 제한 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거. 출입·검사와 수거 너. 폐기 명령 등 더. 업무보고 등 러.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 머. 청문 버.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보건소장
	5.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자의 진료 등 보호 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2조	
	6.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사업 지도 나. 모자보건, 가족계획요원 교육	「모자보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7. 의료장비관리	「물품관리법」 제35조	
	8. 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후조리업 신고 및 사항 변경 나. 산후조리업의 승계 다. 보고·출입·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바.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사. 과징금 아. 청문	「모자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3	

[별표 2]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 임 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노 인 장애인과)	1. 장수수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수수당지급신청서 접수, 지급 대상자 관리·홍보 및 기타 제반업무	「인천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동 장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상위법령 및 상급기관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수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재위임한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별표 형식 변경 (제2조)
 - 위임자(소관부서), 위임사무, 근거, 수임자를 모두 포함하는 형식
- 보건소 재위임사무 정비(조직개편 전 식품위생과 소관 재위임사무)
 - (기존) 8개 재위임사무 ⇒ (조직개편) 삭제 ⇒ (개정) 8개 재위임사무 부활(“별표 1” 신설)
 -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별표 1”에서 “별표 2”로 변경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10월 11일

남동구 규칙 제83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882	560	19	71	17	215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802	517	13	68	17	187
3급 소계	1	1				
행 정	1	1				
4급 소계	6	4	1	1		
행 정	4	3	1			
기 술	2	1		1		
5급 소계	59	28	2	8	2	19
행 정	36	19	2		1	14
의 무	4			4		
시 설	3	3				
행정 · 보건	2			1		1
행정 · 환경	2	1				1
행정 · 시설	2	2				
의무 · 간호	1			1		
행정 · 사서	1				1	
행정 · 녹지 · 시설	3	1				2
행정 · 보건 · 간호	1			1		
행정 · 공업 · 환경	2	1				1
행정 · 농업 · 해양수산	1	1				
행정 · 보건 · 의료기술	1			1		
6급 소계	184	139	6	15	5	19
행 정	100	74	6		3	17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세 무	6	6				
전 산	1	1				
사회복지	6	6				
공 업	2	2				
녹 지	1	1				
보 건	3			3		
환 경	3	3				
시 설	15	15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1	9				2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4	4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5			5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행정 · 사회 · 시설	1	1				
7급 소계	264	173	3	22	5	61
행 정	121	72	3	1	3	42
세 무	25	25				
전 산	3	3				
사회복지	29	10				19
공 업	4	4				
농 업	1	1				
녹 지	6	6				
해양수산	1	1				
보 건	9			9		
의료기술	4			4		
간 호	5			5		
환 경	8	8				
시 설	34	34				
방송통신	2	2				
행정 · 사회복지	2	2				
행정 · 사서	2				2	
공업 · 환경	1	1				
농업 · 수의	2	2				
보건 · 간호	3			3		
공업 · 시설	1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1				
8급 소계	240	151	1	17		71
행 정	123	72	1	1		49
세 무	10	10				
전 산	4	4				
사회복지	33	12				21
공 업	7	7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농 업	2	2				
녹 지	5	5				
보 건	8	1		7		
의료기술	5			5		
간 호	3			3		
환 경	6	6				
시 설	23	23				
방송통신	3	3				
행정·사회복지	4	3				1
보건·간호	1			1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행정·해양수산	1	1				
9급 소계	48	21		5	5	17
행 정	22	5			5	12
세 무	4	4				
전 산	1	1				
사회복지	5	1				4
녹 지	2	2				
보 건	5			5		
시 설	4	4				
행정·사회복지	5	4				1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소계	1	1				
비서실장	1	1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기능직 계	76	39	6	3		28
6급 소계	9	6		1		2
전 기	1	1				
기 계	1	1				
운 전	4	1		1		2
사 무	2	2				
조 무	1	1				
7급 소계	34	22	4			8
건 축	1	1				
전화상담	1	1				
전 기	1	1				
기 계	2	2				
운 전	13	6	1			6
사 무	10	6	3			1
조 무	6	5				1
8급 소계	30	10	2	1		17
기 계	2	1	1			
운 전	11	1				10
사 무	7		1			6
조 무	9	8				1
간호조무	1			1		
9급 소계	3	1		1		1
운 전	3	1		1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13.12.12일자로 공무원 직종개편이 예정되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의 전직을 희망하는 신청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공무원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기관별·직급별 정원 일부개정

－ 기능직 : 전직신청 사무직렬 5명을 조무직렬로 정원 조정(구본청)

기관별 직급별	현 행						기관별 직급별	개 정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기능직 계	76	39	6	3		28	기능직 계	76	39	6	3		28
7 급 소 계	34	22	4			8	7 급 소 계	34	22	4			8
사 무	13	9	3			1	사 무	10	6	3			1
조 무	3	2				1	조 무	6	5				1
8 급 소 계	30	10	2	1		17	8 급 소 계	30	10	2	1		17
사 무	9	2	1			6	사 무	7		1			6
조 무	7	6				1	조 무	9	8				1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10월 11일

남동구 규칙 제83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본문 및 단서조항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다만, 올림픽 입상자는 4년간, 세계선수권대회 1위 및 전국체육대회 3관왕 이상 입상자는 2년간 그 등급을 유지한다.

제15조제4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훈련 및 경기 중 사고로 인하여 근무가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우수선수 유치비 반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 등 적용례) 제3조제7항 및 제15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의 공포 당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선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 우수선수를 유치하여 안정적인 선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및 우수선수 계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 계약기간이 오히려 우수선수가 임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또한 임용된 선수의 복지부동 및 기록경신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며, 이외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운동경기부 선수 임용의 복무기간 단축 (제3조제7항)
5년 → 3년으로 하향 조정
- 운동수당 지급 관련 단서조항 조정 (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 단서조항 조정으로 운동수당 지급 근거 명확성 확보
- 우수선수 유치 임용기간 및 유치비 반납 제외 단서 신설 (제15조제4항)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내부위임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10월 11일

남동구 훈령 제29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내부위임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 내부위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내부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내부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 보건소장에게 내부위임 하는 사항은 2013. 2. 28부터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건소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 임 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1.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항 가. 설치허가 나.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명령, 시설의 장의 교체허가 취소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11조	보건소장

[별표 2]

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위임자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규	수임자
구청장 (복지정책과)	1. 복지대상자 및 의료급여 신청처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의료급여법」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동 장
	2. 수급자 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3.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구청장 (노인장애인과)	1.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구청장 (가정복지과)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구청장 (청소과)	1. 불법쓰레기 지도 단속	「폐기물관리법」 제68조	
	2. 무단방치쓰레기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구청장 (토지정보과)	1. 주소 일괄변경 신청·접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구청장 (세무과)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제1항(별표), 제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기본조례」 제5조	
	2.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3.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확인원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기본조례」 제5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일부를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내부위임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별표 형식 변경
 - 위임자(소관부서), 위임사무, 근거, 수임자를 모두 포함하는 형식
- 보건소 내부 위임사무 정비(조직개편 전 식품위생과 소관사무)
 - (기존) 1개 내부위임사무 ⇒ (조직개편) 삭제 ⇒ (개정) 1개 내부 위임 사무 부활(“별표 1” 신설)
 - 동장에게 내부위임하는 사무를 “별표 1”에서 “별표 2”로 변경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10월 11일

남동구 훈령 제29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각 실·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직 종	계급	정원	직 급 별 내 역
합 계			560	
기 획 예산실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7	행정7
		8급	5	행정4, 전산1
감 사 실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7	행정6, 행정·사회·시설1
		7급	3	행정1, 시설1, 행정·사회·시설1
홍 보 미디어실	계		23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전산1, 방송통신1
		7급	6	행정1, 전산3, 방송통신2
		8급	7	행정1, 전산3, 방송통신3
	기능직	소계	4	
		7급	4	기계1, 사무1, 조무1, 전화상담1
복 지 정책과	계		30	
	일반직	소계	30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1,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7급	8	행정5,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12	행정4, 사회복지6, 행정·사회복지2
		9급	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희망복지 지 원 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6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2
		7급	7	행정1, 사회복지5, 행정·사회복지1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노 인 장애인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5	행정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7급	4	행정2, 사회복지2
		8급	5	행정2, 사회복지3
가 정 복지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5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3
		7급	5	행정4, 사회복지1
		8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9급	2	행정·사회복지2
평생교육 지 원 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6	행정6
		8급	4	행정2, 사회1, 보건1
문 화 체육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4	행정3, 시설1
		8급	6	행정6
사회경제 정 책 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전임다급1)
		7급	4	행정4
		8급	4	행정4
기 업 지원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6급	6	행정4, 공업1, 공업·환경1
		7급	4	행정4
		8급	5	행정3, 공업1, 시설·공업1
농수산 개발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농업·해양수산1
		6급	3	행정·농업1, 행정·시설1, 행정·해양수산1
		7급	7	행정1, 시설2, 농업1, 해양수산1, 농업·수역2
		8급	3	행정·해양수산1, 농업2
녹 색 성장과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공업·환경1
		6급	4	행정1, 공업1, 행정·공업1, 행정·공업·환경1
		7급	2	행정1, 환경1
		8급	4	공업3, 공업·환경1
청 소 과	계		18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행정·환경2
		7급	3	행정2, 환경1
		8급	7	행정4, 환경3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7급	1	사무1
환 경 보 전 과	계		19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환경1
		6급	5	행정1, 환경3, 행정·환경1
		7급	7	환경6, 공업·환경1
		8급	5	행정1, 환경3, 공업1
	기능직	소계	1	
		6급	1	조무1
건 설 과	계		28	
	일반직	소계	25	
		4급	1	기술1
		5급	1	시설1
		6급	6	행정1, 시설4, 공업·시설1
		7급	9	행정2, 공업1, 시설6
		8급	8	행정1, 시설5, 공업2
	기능직	소계	3	
		6급		
		7급	2	기계1, 운전1
		8급	1	조무1
건 축 과	계		22	
	일반직	소계	20	
		5급	1	시설1

		6급	4	행정1, 시설3
		7급	9	행정1, 시설7, 세무1
		8급	4	시설4
		9급	2	시설2
	기능직	소계	2	
		7급	1	건축1
		8급	1	조무1
	도 시 관리과	계	21	
		일반직	소계	20
			5급	1
			6급	5
			7급	6
			8급	6
			9급	2
		기능직	소계	1
			8급	1
도 시 경관과	도 시 경관과	계	16	
		일반직	소계	12
			5급	1
			6급	5
			7급	3
			8급	3
		기능직	소계	4
			7급	1
			8급	3
			조무3	
공 원 녹지과	공 원 녹지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6급	4
			7급	6
			8급	6
			행정1, 녹지5	

		9급	2	녹지2
교 통 행 정 과	계		17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시설1
		7급	5	행정2, 시설3
		8급	4	행정4
		9급	1	전산1
	기능직	소계	2	
		7급	1	조무1
		8급	1	조무1
자 동 차 관 리 과	계		23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4, 행정·공업1, 행정·세무1
		7급	4	행정3, 세무1
		8급	8	행정8
		9급	2	행정2
	기능직	소계	2	
		6급	1	사무1
		7급	1	조무1
총 무 과	계		30	
	정무직	-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24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7	행정7
		7급	6	행정6
		8급	8	행정8
	별정직	소계	3	
		5급	1	비서실장
		6급	1	비서요원(수행)
		7급	1	비서요원(기사)
	기능직	소계	2	

		7급	2	사무2
재 무 과	계		29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공업·시설1
		7급	6	행정3, 공업2, 시설1
		8급	6	행정5, 시설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1	
		6급	3	사무1,기계1,운전1
		7급	6	사무1,운전5
		8급	1	운전1
		9급	1	운전1
세 무 과	계		49	
	일반직	소계	48	
		5급	1	행정1
		6급	9	행정1, 세무6, 행정·세무2
		7급	23	세무23
		8급	10	세무10
		9급	5	행정1, 세무4
	기능직	소계	1	
		7급	1	사무1
민 원 봉사과	계		19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5	행정5
		8급	8	행정8
	기능직	소계	1	
		7급	1	조무1
안 전 관리과	계		16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시설1
		7급	6	행정2, 시설2, 공업1, 공업·시설1
		8급	1	시설1
	기능직	소계	4	
		6급	1	전기1
		7급	1	전기1
		8급	2	기계1, 조무1
	토 지 정보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6급	4
			7급	8
			8급	7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의 전직을 희망하는 신청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부서별 정원(사무⇒조무)을 재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 본청 기능직 정원 주요 조정 현황(별표 1)
 - 기능7급(사무⇒조무) : 홍보미디어실,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 기능8급(사무⇒조무) : 건설과, 안전관리과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 - 142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일부 개정 필요

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기간만료 후 공개경쟁방법으로 적극 운영하여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보육체계 구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및 위탁방법 변경 (안 제12조)

-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 위탁기간 만료 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변경

4.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842, FAX 453-586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신설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 이와 관련한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기간만료 후 공개경쟁방법으로 적극 운영하여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보육체계 구축으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및 위탁방법 변경 (안 제12조)
 -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 위탁 기간 만료 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변경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조항을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위탁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라고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4호 2012. 2. 3. 공포, 2013. 2. 5. 시행) 별표 제8의2의 신설 이후에 위탁받은 운영자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탁기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u>3년</u> 으로 한다. <u>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u>	제12조(위탁기간) _____ _____5년_____. <u>위탁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u>

실·단·과·소·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13 - 1428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 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 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2013.09.26. 등기우편물 반송]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13.10.18.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저당)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3. 10.04. ~ 2013. 10.18.

2. 대상 자동차

신 청 대 상 차 량			이해관계내용	이 해 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 명	사 용 본 거 지			
인천73고3880	서현수	인천광역시 서구 삼곡로	자동차 저당설정 을부번호:2823200600308 설정일자:2006.05.16.	전동식	인천시 남동구 석산로 189-3,***호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 (☎453-2941)

2013년 10월 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 - 143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 및 개선점 등을 보완, 정비코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당연직위원

- 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위원 1인

나. 협의회 구성

- 감사2인 신설

다. 운영위원회

-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당연직 → 분과위원장만 당연직
- 나머지 위원은 상임의장이 위촉 → 3인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위촉
- 부위원장 1인 신설
- 담당 부서의 장 추가

- 간사1인(사무국장)추가

라. 분과위원회

- 부위원장 1인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3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참조 : 녹색성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제출 할 곳 :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녹색성장과(전화 032)453-6103, FAX 032)453-6109, e-mail: kdh1004@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남동구청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이 조례(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별첨

[붙임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 및 개선점 등을 보완, 정비
코자 함

☐ 주요내용

- 당연직위원
 - 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위원 1인
- 협의회 구성
 - 감사2인 신설
- 운영위원회
 -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당연직 → 분과위원장만 당연직
 - 나머지 위원은 상임의장이 위촉 → 3인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위촉
 - 부위원장 1인 신설
 - 담당 부서의 장 추가
 - 간사1인(사무국장)추가
- 분과위원회
 - 부위원장 1인 신설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1호중 “남동의제21”, 제4조제1항중 “지방의제21”, 제4조제3항중 “의제21”, 제5조제5호, 제6호중 “지방의제21”, 제6조제1항제3호중 “남동의제21”, 제8조제2호중 “남동의제21”, 제9조제3항중 “남동의제”, 제12조제3항중 “남동의제21”, 제19조제2호중 “남동의제21”을 “맑은터전 남동의제21”로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추진 및 평가”를 “종합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로 개정하고

제5조제3호중 “조사·연구사업”을 “조사·연구”로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노력으로”를 “노력을 통하여”로 개정하고

제6조제1항제2호 중 “관련분야 실·과장과 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을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위원 1인과 관련분야 실·과장”으로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9조제3항중 “보고·의결하며”를 “보고·승인·의결하며”로 개정하고

제9조제4항중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을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로 개정하고, “연간 사업계획과 실적”을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당해년도 사업 실적”으로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20인 이내로”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중 “간사를”삭제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다음에 “맑은터전 남동의제

21 담당 부서의 장을” 추가하고, “당연직”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의장이 위촉하는 자로”를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로”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제12조제2항중 “30인 이내의 위원으로”를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로 개정하고 “각 분과 내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중 “각 분과위원회는”중 “각”자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를 삭제하고 “다음해”를 “다음년도”로 하며 “사업”을 “사업계획”으로 개정하고 “소요예산”을 “소요예산과”로 개정하며 “내역과”를 삭제한다.

제18조중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을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다”를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반기별로 지급한다”를 “반기별로 지급 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협의회장”을 “상임의장”으로 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생략) 1. “<u>남동의제21</u>”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 · 기업 · 남동구(이하“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 · 기업 · 구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생략)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u>맑은터전 남동의제21</u>”----- ----- ----- ----- ----- 2. (현행과 같음)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u>지방의제21</u>의 실천을 위한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u>의제21</u>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조(책무) ① ----- ----- ----- <u>맑은터전 남동의제21</u>의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맑은터전 남동의제21</u>의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생략) 1.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의 <u>추진 및 평가</u> 2. (생략) 3.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의 실천을 위한 <u>조사 · 연구사업</u> 4. (생략) 5. <u>지방의제21</u>과 관련된 국내 · 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6. 기타 <u>지방의제21</u>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5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u>종합계획수립, 추진 및 평가</u> 2. (현행과 같음) 3. ----- <u>조사 · 연구</u> 4. (현행과 같음) 5. <u>맑은터전 남동의제21</u>과 ----- ----- 6. 기타 <u>맑은터전 남동의제21</u>과 ----- -----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 기업 및 구가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생략)
2. 당연직위원 : 관련분야 실·과장과 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3. 위촉직위원 : 1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기업을 대표할 수 있고, 남동의제 21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자로서 공동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 (생략)

③ <신 설>

제8조(해촉) (생략)

1. (생략)
2. 위원이 장기불참 등으로 “남동의제 21”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었거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 될 경우
3. (생략)

제9조(총회) ① (생략)

② (생략)

③ 총회에서는 상임의장 및 주민대표·기업대표 선출과 남동의제 실천에 관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의결하며,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한다.

④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연간 사업계획과 실적을 총회 개최 10일전까

지 총회에 보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한다.

제6조(구성) ① -----

----- 노력을
통하여 -----

1. (현행과 같음)
2. 당연직위원 :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1인과 관련분야 실·과장
3. 위촉직위원 : -----
----- 맑은터전
남동의제21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8조(해촉)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맑은터전
남동의제2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맑은터전 남동의제21
----- 보고·승인·의결
하며, -----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당해년도 사업실적을 총회 개최 10일전까지 총회에 보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상임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신 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각 분과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 내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당연직인 실·과장은 관련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남동의제21 실천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조사, 연구 및 홍보, 주민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의 지원) (생략)

제10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맑은터전 남동의제21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인 실·과장은 관련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③ 분과위원회는 맑은터전 남동의제21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다음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관계공무원 또는-----
-----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의 지원) (현행과 같음)

1. (생략)
2. 남동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생략)

제20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은 신청에 의하여 반기별로 지급한다.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맑은터전 남동의제21의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
-----반기별로 지급 할 수 있다.

② 상임의장은-----

부 칙 (2013. 00. 00. 조례 제00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 서 별 의 건			
협의개요	부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상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공 고

인천 남동구 공고 제 2013 - 14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음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세외수입(과징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에 의거하여 체납고지 및 압류 예고하였으나, 우편물 송달불가(폐문부재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 및 통지사항 ▶

1. 공고제목 : 『음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과태료 체납고지 및 압류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 미이수, 영업시간 미준수 등
3. 공고대상

대 상 자 (생년월일)	주 소	반송사유	체납액(원)	압류예고 통지일
양*희 (6104**-2)	인천 남구 주안로 160번길~	이사기타, 폐문부재 등	300,000	2013.9.23
김*호 (7405**-1)	인천 남구 경원대로816번길~		500,000	

4. 공고기간 : 2013. 10. 7. ~ 10. 21. (15일간)
 5. 공고장소 : 남동구청 게시판(홈페이지), 관보(구보), 게시판
 6. 문의사항 : 남동구 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 (☎032-453-2143)
- ※ 위 공고에 대하여 2013.10.21.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압류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문화체육과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1435호

2013년 제1차 장기미반환차량 공매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반환 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매대상재산(자동차)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 식	매각예정가	이해관계인
1	16가1440	옵티마	기아	2001	400,000	등록원부참조
2	88가5547	코란도밴	쌍용	1999	700,000	등록원부참조
3	80어6563	카니발6밴	기아	2001	700,000	등록원부참조
4	경기33가7332	매그너스2 DOHC	대우	2000	400,000	등록원부참조

2. 공매일정

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13. 10. 14(월) ~ 2013. 10. 28(월) 24:00 (14일간)

나. 입찰참여 마감 : 2013. 10. 28(월) 24:00

※ 24:00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다. 입찰결과 발표

: 2013. 10. 29(화) 14:00 /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http://www.automart.co.kr>)에 발표

3. 공매방법

-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방식 적용
- 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
- 다.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
- ※ 1인 입찰(단독입찰)시는 유찰처리 됨.

4.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 나.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찰가액의 10/100 이상 입금해야 부여되며, 입찰기한 내 입찰보증금 미입금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참가 자격을 취소합니다.
- ※ 입금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3-701727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본인명의로만 입금)
-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매각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이면 익일)에 환불됩니다.
-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 마. LPG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열거한 자에 한하여 취득이 가능하므로 입찰시 반드시 취득가능한 자 명의로 입찰하여야 하며, 자동차 인도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기간(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사.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5.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를 거쳐 우리 구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재 공매 조치합니다.
-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 동일하며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6. 매각예정가격 :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된 이번 회차 공매최저가격임

7.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의 취소

- 가. 공매진행중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등이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 나. 매수대금(잔금)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 가. 매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대금(잔금)납부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로부터 15일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9.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열람 및 현지압사 등을 통해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한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가. 공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 나.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입찰전에 차량보관소를 방문하고 차량상태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라. 견인차량보관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5-46 (☎032-438-6282)
- 마. 낙찰되고 계약체결 후 차량인수증을 작성하고 인수해간 차량은 어떤 사유로도 반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매각차량중 번호판 없는 차량은 낙찰자가 영치부서에서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 차량공매담당자(☎032-453-2907, FAX032-453-289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 2013 - 1439호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에 등록된 아래 소재불명 대부(중개)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 10. 08~ 2013. 11. 08 (31일간)
3. 공고대상

일련 번호	등록번호	상 호	소재지	업체 구분	비고
1	인천 남동구2012-12	NMent대부중개	인천 남동구 미래로23, 1318호 (구월동, 신한대뷰오피스텔)	개인	소재지 불명

4. 공고내용

가.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소재불명으로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오니, 공고기간 만료전까지 소재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대부(중개)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2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3 - 1440호

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차량소유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자진폐차 및 자진회수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은 강제처리(폐차·말소)됨은 물론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부과(100~150만원) 또는 동법 제88조에 의거 형사처벌(1년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10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3. 10. 11. ~ 2013. 10. 30. (20일 간)
2. 강제처리(강제폐차·말소 및 범칙처분) : 2013. 10. 30 이후
3. 폐차예정장소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184 ☎032-442-6660)
 - (주)인천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논현동 423-2 ☎032-814-7077)
 - (주)기전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726-7 ☎032-814-4400)
4. 대상차량 : 인천80너1791 (포터) 외 17대 (내역별첨)
- ※ 차량 폐차 시 차량내의 유류품도 함께 폐기됩니다.
5. 문 의 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0 ~ 5)
-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 - 1448호

수용재결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림3지구 소-1호선,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2013.9.13일자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불명으로 송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 : 도림3지구 소3-1호선,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일원
4. 공 고 기 간 : 2013. 10. 10 ~ 10. 24
5.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관리과(032-453-2991)
6. 공시송달내용 :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본
7. 공시송달대상 : 관계인

○ 조※석 :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482-3

8. 기타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3-1452호

「남동구청 꿈나무스포츠단 (야구단·축구단)」 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꿈나무어린이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방과 후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 여가 생활에 기여하고자 꿈나무스포츠단(야구단·축구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야구와 축구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많은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13. 10. 14. ~ 11. 6. (24일 간)
- 모집인원 : 야구단 40명 이내, 축구단 40명 이내
- 모집대상 :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 ~ 5학년생(야구 1~6학년생)
※ 방과 후 체육활동이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선수양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 모집방법 : 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선발방법 : 기초체력테스트 및 개인기 등
 - 야구 : 달리기(50m), 윗몸일으키기, 멀리던지기, 배팅·스윙, 캐치볼(연습게임)
 - 축구 : 달리기(50m), 순발력(지그재그달리기), 드리블->슈팅, 집중력(미니게임)
- 선발일시 및 장소

구 분	리틀야구단	유소년 축구단	비 고
선발일시	2013. 11. 9(토) 14:00 ~		
선발장소	남동구청 리틀야구장 (논현동 남동고등학교 옆)		

- 보험가입 : 지원자 개인보험 가입 요망
※ 「인천광역시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야구단·축구단)」 선수 선발심사 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는 남동구에 일체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훈련기간 : 2013. 12. 2. ~ 2014. 11. 30. [주 4일 이내 (1일 2시간)]
- 지원사항(특전)
 - 선발된 스포츠단은 한국리틀야구연맹(야구) 및 대한축구협회(축구) 회원(선수) 등록
 - 스포츠안전보험가입, 각종대회 출전, 기타 훈련지원 등
- ※ 유니폼 및 운동화 등 개인용품 본인부담**
- 스포츠단 합격자 발표 : 2013.11.14(목)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SMS문자 발송
- 문 의 : 남동구 문화체육과 체육지원팀 (☎453-2155)

2013년 10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3 - 31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10. 18.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3. 10. 08. ~ 2013. 10. 17.(10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논현- 342	가곡골은	장영서	소래역로12, 1층 206,207호 (논현동, 소래어시장)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2.12.31	2013.10.18

6. 고 지 사 항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10. 17.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제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6

2013년 10월 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3 - 101 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00번길 21-8외 5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72번길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4-8	2013.10.0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49번길 8-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76-6	2013.10.0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71-3	2013.10.0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7-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71-4	2013.10.0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5-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71-5	2013.10.0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32번길 2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71-12	2013.10.0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32번길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71-31	2013.10.0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155번길 8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6-15	2013.10.0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30번길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4-6	2013.10.0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30번길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4-19	2013.10.0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찬우물로 9-9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99	2013.10.0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